

창원지방법원 2024. 11. 8 선고 2024가단2633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10. 18.

판 결 선 고 2024. 11. 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,
나. 2,750,000원 및 2024. 7. 17.부터 별지1 기재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550,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,750,000원 및 2024. 6. 17.1)부터 별지1 기재 부동산

인도완료일까지 월 550,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인정근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3. 일부 기각

원고는 “피고가 2024. 2. 17.부터 5개월간 차임 275만 원을 연체하였으므로, 275만 원 및 2024. 6. 17.부터 별지1 기재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55만 원의 비율에 의한 연체차임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.”고 주장한다.

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24. 2. 17.부터 5개월은 2024. 7. 16.까지이므로, 연체차임 또는 부당이득반환은 275만 원 및 2024. 7. 17.부터 별지1 기재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55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이 된다. 따라서 이를 넘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.

판사 박규도

별지

1) 청구취지에 2024. 4. 17.로 기재되어 있지만 청구원인에 비추어 보면, 2024. 6. 17.의 오기로 보인다.